

보도시점 2026. 5. 27.(수) 12:00 (2026. 5. 28.(목) 조간)

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 「재해조사보고서」 대국민 공개

-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'26.6.1.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, 판결 확정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
- 재해 발생 일시·유형·업종·기업 규모 등 검색 가능한 방식으로 홈페이지 공개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('26.6.1.)을 앞두고,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.

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,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다. 전문기관의 조사·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,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.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「노동안전 종합대책('25.9.15.)」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으며, 동 내용을 담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안이 국회 의결 및 공포('26.2.19.)되었다.

개정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, 법 시행일('26.6.1.)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. 「정보공개법」에 따른 개인정보·영업상 비밀·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.

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(정보공개-재해조사보고서 공개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해당 게시판은 ▲재해 발생 기간, ▲업종(건설업·제조업 등), ▲기업 규모(50인 미만·이상), ▲지역(17개), ▲재해 유형(떨어짐·끼임 등)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였다.

※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(산재예방정보-재해사례-재해조사보고서)에서도 확인 가능

아울러,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.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,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관리 방식,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.



고용노동부는 6.1.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우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('24년 발생)을 공개하였으며, '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등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.

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공·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·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,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·원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.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개정 산업안전보건법(6.1 시행)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

재해조사보고서란?

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
·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
(재해 원인, 경위 등 포함)

어디서 볼 수 있나요?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
보고서 공개 전용 게시판
(정보공개 - 재해조사보고서 공개)

어떻게 활용하나요?

동종·유사 재해 예방,
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
자유롭게 활용 가능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, 원인 등을 확인하고,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”이라고 평가하며, “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, 사업장 대상 안내·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	책임자	과 장	이경제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호준 (044-202-8952)
			주무관	고준혁 (044-202-8954)
담당 부서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조사계획부	책임자	부 장	유 민 (052-703-0121)
		담당자	차 장	박웅기 (052-703-0122)
			과 장	정수빈 (052-703-0124)

